

주식회사 하나투어

ESG위원회 운영 규정

제1장 총 칙

제1조 목적

주식회사 하나투어 (이하 "회사"라 한다)의 ESG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운영규정은 정관 및 이사회 규정에 따라 ESG 위원회가 제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의 기준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적용범위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 권한

- ① 위원회는 투명한 지배구조로 회사의 건전성을 높이고 환경, 사회에 미치는 회사의 영향을 분석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이끌어내 회사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의 환경, 사회, 지배구조 부문을 전략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.
- ② 위원회는 회사의 ESG 운영과 관련한 다양한 주제, 쟁점을 발굴, 파악하여 회사의 지속가능 경영전략 및 방향성을 점검하고 이와 관련된 성과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평가·검토한다.

제2장 구 성

제4조 구성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이어야 한다.
- ③ 위원의 임기는 동 위원의 이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 위원장

- ① 위원회는 제8조 규정에 의한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의 유고시에는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3장 회 의

제6조 소집권자

-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②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7조 소집절차

-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개최일 7일 전에 각 위원에게 문서, 전자문서, 구두, 기타 발송 및 수신 여부를

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위원 전원의 동의를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8조 결의 방법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위원회의 의안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위원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제9조 부의 사항

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- ① 회사 ESG 전략 방향
- ② 전년도 ESG 추진 과제 이행사항 결과 및 당해년도 추진 계획
- ③ 환경, 사회 관련 주요 비재무 이슈 사항 및 대응책
- ④ 정기적 비재무 리스크 요인 검토 결과
- ⑤ 국내외 주요 ESG 평가 결과 등 이해관계자 커뮤니케이션 관련 사항
- ⑥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이사회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
제10조 관계인의 의견 청취

- 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의견을

청취할 수 있다.

제11조 통지 의무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2조 의사록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.

제4장 보 칙

제13조 간사

- ① 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한다.

제14조 규정의 개폐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.